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3744호)

2024. 1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지민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3
1. 장기요양의 날 지정	3

I. 개요

1.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3744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김예지의원 등 11인

(2) 제 안 일 : 2024. 9. 6.

(3) 회 부 일 : 2024. 9. 9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%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,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.

따라서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이에 10월 4일을 ‘장기요양의 날’로 제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.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장기요양의 날 지정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지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,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4조의2(장기요양의 날) ①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, 장기요양요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한다.</u>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

※ 시행일 :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

나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10월 4일을 법정기념일인 ‘장기요양의 날’로 지정하도록 하고,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, 관련 기관·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현행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에서 법정기념일을 지정하고 있는 입법을 살펴보면, 「국민건강증진법」상 보건의 날(4월 7일)¹⁾,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인의 날(4월 20일)²⁾, 「아동복지법」상 어린이 날(5월 5일), 「노인복지법」상 어버이 날(5월 8일), 노인의 날(10월 2일) 및 노인학대예방의 날(6월 15일)³⁾ 등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련된 기념행사 및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- 최근 급속한 고령화⁴⁾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및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등 해당 분야 종사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⁵⁾,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하여 장기요양제도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해당 분야 종사자

1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의2(보건의 날) ① 보건의 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,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4조(장애인의 날)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,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3) 「노인복지법」 제6조(노인의 날 등)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,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.

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.

③ 삭제 <2011. 8. 4.>

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4) 노인인구 추이 : 8,003,418명(2019년) → 8,912,785명(2021년) → 9,858,810명(2023년)

5)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추이 : 772,206명(2019년) → 953,511명(2021년) → 1,097,913명(2023년)

요양보호사 추이 : 444,525명(2019년) → 507,473명(2021년) → 610,069명(2023년)

를 격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.

□ 다만, 장기요양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, 해당 일자가 장기요양사업을 기념하기에 적절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참고로, 대통령령인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는 법정기념일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역사적·문화적 의의, 정책적 필요성,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, 기존 기념일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⁶⁾

6)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제2조(기념일 등)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2] 기념일의 지정기준(제2조제2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가.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
 - 나. 과학기술·경제발전·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
 - 다.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·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
 - 라.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
 - 마.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.
 - 가.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
 - 나.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,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
 - 다.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라.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

다. 관계부처 및 관련부서 의견

□ 보건복지부

- 기념일 지정이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지정하는 날짜가 장기요양의 날 지정 취지에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□ 행정안전부

- 개별 법률에서 ‘장기요양의 날’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사안은 정책적 필요성,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, 기존 기념일과의 유사·중복 여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503

<참고자료>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기념일 및 근거법률 현황

기념일	근거법률	내용
결핵예방의 날	결핵예방법	제4조(결핵예방의 날)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<u>매년 3월 24일</u> 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구강보건의 날	구강보건법	제4조의2(구강보건의 날)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<u>매년 6월 9일</u> 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노인의 날 어버이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	노인복지법	제6조(노인의 날 등)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<u>매년 10월 2일</u> 을 <u>노인의 날</u> 로, <u>매년 10월</u> 을 <u>경로의 달</u> 로 한다.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양양하기 위하여 <u>매년 5월 8일</u> 을 <u>어버이날</u> 로 한다. ③ 삭제 <2011. 8. 4.>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<u>매년 6월 15일</u> 을 <u>노인학대예방의 날</u> 로 지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보건의 날	국민건강증진법	제3조의2(보건의 날)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<u>매년 4월 7일</u> 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,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사회복지의 날	사회복지사업법	제15조의2(사회복지의 날)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<u>매년 9월 7일</u> 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,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기념일	근거법률	내용
실종아동의 날	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	제3조의2(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) ① 실종아 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 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<u>매년 5월 25일</u> 을 실종아동 의 날로 하고,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 동주간으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 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·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아동학대 예방의 날	아동복지법	제23조(아동학대예방의 날) ① 아동의 건강한 성 장 을 도모하고,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 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<u>매년 11월 19일</u> 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, 아동학대예방 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암 예방의 날	암관리법	제4조(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) ① 암에 대한 국민 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·치료 및 관리 의욕 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<u>매년 3월 21일</u> 을 암 예방 의 날로 정하고,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 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,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 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·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어린이 날	아동복지법	제6조(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) 어린이에 대한 사랑 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 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 여 <u>매년 5월 5일</u> 을 어린이날로 하며,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.
인구의 날	저출산· 고령사회 기본법	제30조의2(인구의 날)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 는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 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, 저출산·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<u>매년 7월 11일</u> 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 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
기념일	근거법률	내용
임산부의 날	모자보건법	제3조의2(임산부의 날)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<u>10월 10일</u> 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.
입양의 날	입양특례법	제5조(입양의 날)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<u>5월 11일</u> 을 입양의 날로 하고,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자살예방의 날	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	제16조(자살예방의 날)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<u>매년 9월 10일</u> 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,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장애인의 날	장애인복지법	제14조(장애인의 날)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<u>매년 4월 20일</u> 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,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정신건강의 날	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	제14조(정신건강의 날)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<u>매년 10월 10일</u> 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,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(週)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치매극복의 날	치매관리법	제5조(치매극복의 날)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<u>매년 9월 21일</u> 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기념일	근거법률	내용
호스피스 의 날	호스피스·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 자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	제6조(호스피스 의 날 지정)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 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 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 월 둘째 주 토요일을 "호스피스 의 날"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 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 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희귀질환 극복의 날	희귀질환 관리법	제4조(희귀질환 극복의 날) 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 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·치 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 년 2월의 마지막 날을 희귀질환 극복 의 날로 정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, 희귀 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교육·홍보 사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.